학교생활인권규정

東和

동화고등학교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 권리와 의무 1

제1절 권리와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3절 용의복장 및 교복·체육복
제4절 학교내·외 활동
제5절 정보통신
제6절 환경과 안전
제7절 자기정보 결정권
제8절 학업중단 예방

제3장 학생자치회 7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2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18

제1절 총칙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5절 규정의 개정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 26

※ 붙임
제1호 서식 교복·체육복 사양서
제2호 서식 위원 공고
제3호 서식 선거일 공고
제4호 서식 투표자 명단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6호 서식 추천장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제8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제9호 서식 후보자(사퇴) 공고
제10호 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등록 신고서
제11호 서식 투표 용지 예시
제12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서
제14호 서식 선거 운영 보고서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제16호 서식 이의 신청서
제17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5항 31호 근태관련'의 세칙
제18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6항 32호 약물흡연 관련'의 세칙 - 음주, 흡연 학생 생활교육처분 기준
제19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에 관한 가중 처벌 관련 세칙

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동화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동화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 개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 2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항과 관련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⑭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⑮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제5조[의무]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⑨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공공 질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받을 의무
⑩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에 응할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6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7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이성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절 용의복장 및 교복 · 체육복

제10조[두발] 학생 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① 두발의 길이는 자유롭게 한다.

② 삭발이나 비대칭 헤어스타일(부분삭발, 스크래치 등)은 금지한다.

③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요란한 머리 핀, 끈, 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색채 염색이나 탈색, 파마, 코팅을 할 수 없고 무스, 스프레이, 헤어로션, 젤 등은 단정한 두발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은 바를 수 있으나 머리 형태를 변형하기 위한 사용은 금지한다.

⑤ 개인적인 사유로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을 해야 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생활인권안전부장의 허락을 득하도록 한다.

제11조[복장]

①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지정된 교복 및 체육복, 생활복)으로 생활한다.(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12조[용모 및 장신구]

① 고가의 보석이나 과도한 장신구(선글라스, 피어싱 등)착용은 금지한다.

②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손톱은 짧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매니큐어는 무색만 허용한다.

제13조[신발 및 가방 등] 신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① 평상시 신발은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② 체육시간에는 운동화만 착용한다.(축구화, 런닝화 가능)

③ 학교 실내에서는 실내화(또는 슬리퍼)를 착용한다.

④ 굽이 높은 구두나 부츠, 샌들,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것은 금지한다.

⑤ 책가방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은 금지 하며, 고가의 제품은 지양한다.

제14**조**[**교복 · 체육복**] 지정된 교복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① 교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는다.

1. 겨울철 : 동복
2. 봄, 가을 : 춘추복
3. 여름철 : 하복
4.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교복의 인위적 변형은 금지한다.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복의 부착물은 지정된 곳에 항상 부착한다.(학교 배지)

④ 동복, 춘추복을 입는 기간 중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⑤ 학교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등교할 때는 항상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여학생은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⑥ 체육복은 해당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만 착용한다.

⑦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⑧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절 학교내.외 활동

제15**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18**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환경 및 청소]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1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23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정보 통신

제24조[사이버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정보통신기기] 교내에서의 개인 통신기기 관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도 위의 사항에 준한다.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④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6절 환경과 안전

제26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27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① 일반쓰레기

② 재활용품

③ 음식물쓰레기

제28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④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⑤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④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7절 자기정보 결정권

제30**조**[개인정보 열람·청구·정정·삭제]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절 학업중단 예방

제31**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장 학생자치회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32**조**[**명칭**] 이 회는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3**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34**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35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6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본 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문화예술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홍보부 :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⑤ 바른생활부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관련 사항
⑥ 소통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⑦ 동아리연합부 : 동아리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⑧ 미디어부 :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사항
⑨ 회계, 서기 :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후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제37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2학년), 부회장 2인(2학년 총2인)
2. 각 부의 부장 1인(2학년), 차장 1인(1학년)

제40**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41**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3장 2절의「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에 따른다.

② 부장, 차장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장은 차장이 학년 진급에 의해 당연 임명되는 것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2. 학생자치회 각부 차장은 1학년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3.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 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 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10월~11월 중에 1학년 후보자 중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다음 학년도로 한다.

제42**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43**조**[**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44**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안전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45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이하 "회장단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⑨ 위원회 위원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생자치회 운영위원단 중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8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권자**] 회장단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50조[**투표자 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51조[후보자 자격]

①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52조[후보자 등록]

① 회장단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6호 서식) 1부
3. 공약서 1부

②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단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④ 회장단 후보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의 러닝메이트 형태로 등록해야 한다.

제53조[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4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5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55조[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40㎝, 세로 55㎝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56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부정선거나 선거무효 판정은 학교장이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9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60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1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61조[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3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62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 팀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팀을 회장단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단 후보가 1팀인 경우에는 후보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그 후보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 팀이 2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 팀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63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단일 후보팀이 출마하고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4. 제 60조 ③의 경우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4조[보궐선거]

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회장 2명 중 한 명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5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66**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51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7**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68**조**[**명칭**] 이 회는 '동화고등학교 학급자치회' 라 한다.

제69**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70**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71**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선교부장 1명을 두고, 학급운영에 필요한 여러 부서를 구성하여 각부 부장을 선출한다. 부서의 수와 명칭은 학급 구성원 및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72**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 · 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3**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 · 운영한다.

제74**조** [**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과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75**조**[**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 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짐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77조[**명칭**] 이 규정은 ‘동화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규정’이라 한다.

제7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80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81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단일기구)를 둔다.

제82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83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학년부장,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학생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8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8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소생활교육위원회,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서 약식 징계를 금지한다.

제8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90조[징계의 종류]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상한을 지켜 실시한다.

제91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 ·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퇴학(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92조[퇴학처분 전 조치]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항	제호	내용	징계기준					비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① 품행관련	1	교복 및 두발 규정을 위반한 학생 (1차 적발-훈계, 2차 적발-반성문, 3차 적발-교내봉사, 교내봉사 중 또는 이후에도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중 처벌)	●	●				
	2	등·하교 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학생	●	●	●	●		
	3	다른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생	●	●	●	●		
	4	언행불량으로 주민이나 내교자에게 진정을 받은 학생	●	●	●	●		
	5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7	교사에게 욕설을 사용하여 모욕을 준 학생				●	●	

	8	교사에게 협박을 하거나 성희롱을 가한 학생				●	●	
	9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	●	
② 준법 관련	10	교문 이외의 울타리를 넘어 등교나 외출한 학생	●	●	●	●		
	11	유흥업소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적발된 학생	●	●	●	●	●	
	12	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연행된 후에 훈방된 학생	●	●				
	13	학교 기물이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학생	●	●				변상 조치
	14	교내 CCTV를 고의로 파손 훼손한 학생				●	●	변상 조치
	15	학생금지물품(흉기, 약물류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16	기타 교외에서 위법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17	공문서를 위, 변조하여 불순한 목적에 사용한 자		●	●			
③ 수업 관련	18	학습 태도가 불량하여 다수 지적받았으나 개전의 여지가 없는 학생(잡담, 군것질, 핸드폰 사용 등)	●					
	19	의도적으로 수업 및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모의에 가담한 학생	●	●	●			
	21	수업, 시험, 등교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주도한 학생			●	●	●	
	22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학생				●	●	
	23	수업을 매시간 방해하고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학생	●	●	●	●		

제항	제호	내용	징계기준					비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④ 풍기문란 관련	24	음란물을 소지 또는 유포한 학생	●	●				
	25	교, 내외에서 동성 또는 이성과 불건전한 접촉을 한 학생	●	●	●	●		
	26	신체에 문신 또는 피어싱을 한 학생	●	●	●	●		
	27	학생출입 금지 장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28	불법 아르바이트(유흥업소, 도우미)를 한 학생		●	●	●		
	29	도박을 한 학생(상습적인 학생은 가중처벌)	●	●	●			
	30	본인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고의로 출입한 학생	●	●	●			
⑤ 근태 관련	31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 결석 관련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는 학생(허위 질병이나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	
⑥ 약물 흡연 관련	32	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학생	●	●	●	●	●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 등을 사용한 학생			●	●	●	
⑦ 금품 절취 관련	34	교내에서 절도를 하거나 교사, 공모, 방조한 학생	●	●	●	●		
	35	일과 중 빈 교실에 허락없이 무단 침입한 학생	●					
	36	온라인 금품절취 및 불법도박을 한 학생		●	●			

① 항목별 횟수와 사안의 동기, 증거, 정황 등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② 동일 학년에 2회, 재학 중 3회 이상 생활교육을 받은 때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③ 학교 행사(수학 여행, 극기 훈련, 현장 실습, 관람 등)중 교사의 지시 불이행과 제반 사고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준한다.

④ 생활교육 기준 이외의 사안,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 가중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⑤ 폭행에 대한 생활교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본 규정은 학교 운영 실정에 따라 실시하되 동일 사건으로 여러 학교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관내 공동학생생활교육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3조 생활교육기준 중 '제5항 31호 근태관련'의 세칙

■ 근거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90조 [생활교육의 기준]

항	호	내 용	징계기준
⑤ 근태 관련	35	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2회 이상	• 교내봉사
		②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7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3회 이상	• 사회봉사
		③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5회 이상	• 특별교육이수
		④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8회 이상	• 출석정지(3일)
		⑤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12회 이상	• 출석정지(7일)
		⑥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5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15회 이상	• 출석정지(10일)
		⑦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0회 이상 또는 미인정 결석 20회 이상	• 출석정지 및 퇴학

※ 횟수는 1일 1회로 기록된다.
※ ①~⑦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당해 연도 **분기별**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1학기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2학기에 누적 적용하지 않는다.)
※ 미인정으로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수업에 늦게 참여하거나, 교육활동(수업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는 결과처리를 할 수 있다.〔관련: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94**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재심의 신청 및 절차]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6**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97**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8**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 · 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 ·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 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 · 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 · 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 처리한다.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99**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1**조**[**결과 처리 · 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 개정 절차

제10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5**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

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9**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10**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12**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동화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②**(준 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붙임 제1호 서식]

동화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춘추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남학생 상의 (재킷)		양모(울) 60% 폴리 40%	* 곤색 이중 개버딘조직 * 왼 가슴 주머니에 학교 와펜 부착 * 카라라인, 옷여밈 라인까지 회색 0.8cm 회색 파이핑 처리 * 입술, 후다 주머니 * 2버튼
여학생 상의 (재킷)		양모(울) 60% 폴리 40%	* 곤색 이중 개버딘조직 * 왼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허리 주머니 입술, 후다 * 카라라인에 0.8cm회색 파이핑처리 * 2버튼
바지		양모(울) 60% 폴리 40%	* 회색 * 기본 신사바지 노턱(no tuck) 스타일 * 앞판 양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양쪽 주머니 * 뒷주머니 왼쪽에 단추 1개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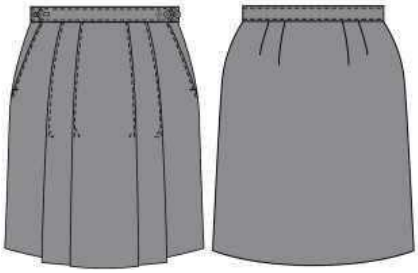	양모(울) 60% 폴리 40%	* 회색 * 앞판 오른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좌,우 5cm 외주름 2개씩 처리 * 주름스티치 : 20cm

니트 조끼		양모(울) 50% 아크릴 50%	* 곤색 브이넥 니트 조끼 * 왼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V넥라인에 0.7cm 회색라인 배색 * 넥라인 꽈배기 무늬
와이셔츠		폴리 78% 레이온 22%	* 백색 싱글 스타일의 긴팔셔츠 * 왼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 각 카라 * 넥 안쪽, 소매 안쪽에 동일한 체크 배색
블라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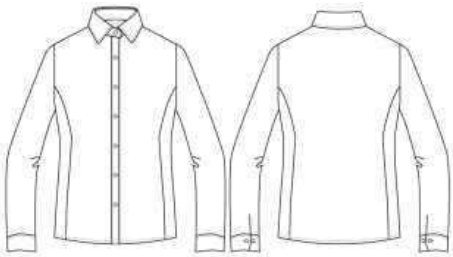	폴리 78% 레이온 22%	* 백색 * 라운드형 카라 긴팔셔츠
넥타이 / 리본		폴리 100%	* 검붉은색 바탕의 노란색, 곤색 대각선 줄 무늬
가디건		양모(울) 50% 아크릴 50%	* 곤색 브이넥 가디건 * 왼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넥라인에 곤색 4mm, 그레이 13mm 배색 * 소매, 몸판 밑단에 5mm 그레이 배색 처리 * 단추 6개

2. 하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와이셔츠		폴리 78% 레이온 22%	* 왼쪽 가슴에 아웃 포켓 부착 * 왼 가슴 주머니에 학교 와펜 부착 * 넥 안쪽, 소매단 안쪽에 동일한 체크 배색 * 주머니, 소매에 8mm 회색 배색처리 * 단추 여밈 라인에 붉은색, 회색 사선 배색처리 16mm (간격 11mm) * 넥 안쪽, 소매 안쪽에 동일한 체크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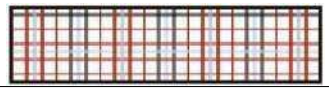
블라우스		폴리 78% 레이온 22%	* 왼 가슴에 학교 와펜 부착 * 스탠카라 백색 반상의 * 주머니, 소매 8mm와인배색처리 * 단추 여밈 라인에 붉은색, 회색 사선 배색처리 12mm (간격 13mm) * 앞 벌어짐 방지 처리
리본		폴리 100%	* 하복 블라우스 배색과 동일한 색상
바지		양모(울) 60% 폴리 40%	* 회색 * 기본 신사바지 노턱(no tuck) 스타일 * 앞판 양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양쪽 주머니 * 뒷주머니(단추 1개)
치마		양모(울) 60% 폴리 40%	* 진회색 * 앞판 오른쪽 허리 조절 깡지퍼 * 좌우 5cm주름 2개씩 처리 * 주름스티치는 허리에서 12cm로 한다.

생활복		기능성 폴리 100%	* 넥 안쪽, 학꼬, 옆트임 사이드밴드에 하늘색 사선 스트라이프 배색 * 왼 가슴 주머니에 명찰 후다 * 학꼬 사이즈 : 1.2x7.2cm * 소매, 등판에 하늘색 사선 스트라이프 파이핑 * 왼쪽 가슴주머니 밑 학교 로고부착 * 양쪽 허리 밑단에 5cm 트임
반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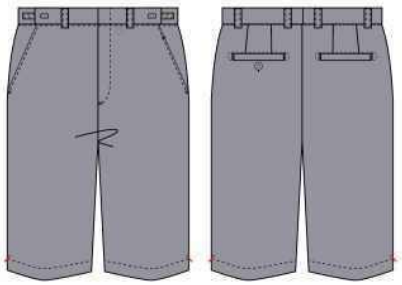	나일론 54% 기능성폴리 38% 폴리우레탄 8%	* 회색 * 양쪽 허리 조절 깡지퍼 * 노턱(no tuck) 스타일 반바지 * 양쪽 바지밑단에 트임

※ 기타 유의사항은 견본(현품)을 기준하여 제작

3. 체육복 (동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상의			
하의			

4. 체육복 (하복)

분류	디자인	재질 (섬유혼용률)	제작시 유의사항 (디자인 특징 및 주안점)
상의			
하의			

※ 기타 유의사항은 견본(현품)을 기준하여 제작

[붙임 제2호 서식]

위원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원명단

구분	학 년.반	성명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붙임 제3호 서식]

선거일 공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기간			
합동소견발표회			
투표일			
개표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4호 서식]

투표자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호	성명	서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월일

작 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5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후보자	학번	이름
회장		
부회장		
부회장		

붙임. 후보자 추천서 1부
후보자 공약서 1부
후보자 공정선거 서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6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추천장

▣ 추천후보자

후보자	학번	이름
회장		
부회장		
부회장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 추천자 명부 1부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추천인 명부>

연번	학번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 제7호 서식]

후보자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회장단 선거 후보자 명단

회장후보자				부회장후보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8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사퇴 신고서

본인은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구분	기호	후보자명단	사유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9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_____년 ____월 ____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분	기호	후보자명단	(등록무효) (사퇴) 연월일	사유

년 월 일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붙임 제10호 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등록 신고서

※ 유의사항
가. 선거운동도우미는 15명 이하로만 구성 가능하며, 선관위에서 공지한 일정 이내에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로 제출해야 한다.
나. 선거운동 도우미 활동은 학교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에만 등록 신고된 인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다. 선거운동 도우미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후보자에 있다.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학생자치회장 선거운동을 위한 도우미를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후보자 기호 : _____번
◎ 선거운동 도우미 명단

연번	학번	이름	연번	학번	이름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1호 서식]

투표용지예시

학 생 회 장 단 선 거

1		
2		

선거관리위원회

동화고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장 선거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에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후보자 기호 : _____번
◎ 개표 참관인 명단

후보자	학번	이름
참관인1		
참관인2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인)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3호 서식]

작성자	부위원장	협조	위원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개표 결과서

◎ 투표 및 득표 결과

선거인수(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합계(다)
기호 1	기호 2	기호 3	기호 4	기호 5	기호 6	

무효표(라)	기권자수(마)

◎ 참관인 확인

기호	서명	기호	서명	기호	서명
1		2		3	
4		5		6	

선거 개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4호 서식]

작성자	부위원장	협조	위원장

학생자치회장 선거 운영 보고서

작성일시	
선거운영 일정보고	
선거결과 보고	
선거지원비용 결산	
특이사항 보고	
운영 과정에서의 우수점에 대한 성찰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성찰	
붙임서류 목록	(선거기간 중 제출받은 전체 서류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상기와 같이 학생자치회 선거 결과를 보고합니다.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_____년 ____월 ____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당선자 명단>

회장		부회장	
학년.반.	이름	학년.반.	이름

년 월 일

동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붙임 제16호 서식]

선거 (운영)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 내용 요약		
세부 설명		

동화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7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5항 31호 근태관련'의 세칙

■ **근거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93조 [생활교육 기준]**

항	호	내용	징계기준
⑤ 근태 관련	35	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3회 이상	교내봉사
		②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5회 이상	사회봉사
		③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8회 이상	특별교육이수
		④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12회 이상	출석정지(3일)
		⑤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0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15회 이상	출석정지(7일)
		⑥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20회 이상	출석정지(10일)
		⑦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45회 이상 또는 미인정결석 30회 이상	출석정지 및 퇴학

※ 횟수는 1일 1회로 기록된다.

※ ①~⑦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합은 당해연도 1년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 미인정으로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수업에 늦게 참여하거나, 교육활동(수업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등에는 결과처리를 할 수 있다.〔관련: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붙임 제18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 중 '제6항 32호 약물흡연 관련'의 세칙
- 음주, 흡연 학생 생활교육처분 기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음주 또는 흡연으로 간주한다.

1.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2.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
3. CCTV나 휴대전화에 음주 또는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경우
4. 음주측정 양성 반응인 경우 또는 흡연측정기 결과가 7 이상인 경우
5. 학생 본인이 사실을 진술할 경우

■ 단계별 생활교육처분 기준

<table>
<tr><th>적발
횟수</th><th>생활교육처분 내용</th><th>지도사항</th></tr>
<tr><td>1회</td><td>생활교육처분(교내봉사 등)</td><td rowspan="2">청소, 금연 캠페인 및 교육
자기계발
교감선생님과 상담</td></tr>
<tr><td>2회</td><td>생활교육처분(교내봉사 및 사회봉사)</td></tr>
<tr><td>3회</td><td>생활교육처분(사회봉사 및 특별교육)</td><td>특별교육이수기관 안내
(서울 북부 청소년 꿈센터)</td></tr>
<tr><td>4회</td><td>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td><td rowspan="3">출석정지 3일, 7일, 10일
가정학습 및 상담
교장선생님과 상담</td></tr>
<tr><td>5회</td><td>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td></tr>
<tr><td>6회</td><td>생활교육처분(특별교육 및 출석정지)</td></tr>
<tr><td>7회</td><td>생활교육처분(출석정지 및 퇴학)</td><td>교사지시 불이행 및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td></tr>
</table>

[붙임 제19호]

제93조 생활교육의 기준에 관한 가중 처벌 관련 세칙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1.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거부한 경우
2. 징계 처분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
3. 징계를 받고 난 이후 동일 사항에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4. 징계를 받고 있는 중 동일 또는 다른 사항에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단계별 가중 처벌 기준**

징계 기준	가중처벌 내용	지도사항
교내봉사	1차 : 교내봉사 3일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반성문 작성 교감선생님과 상담
	2차 : 교내봉사 5일	
	3차 : 교내봉사 7일 또는 사회봉사로 상향 조정	
사회봉사	특별교육으로 상향 조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안내 (서울 북부 청소년 꿈센터)
특별교육	출석정지로 상향 조정	출석정지 3일, 7일, 10일 가정학습 및 상담 교장선생님과 상담 교사지시 불이행 및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출석정지	출석정지 및 퇴학	

※ 가중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가중 처벌에 관한 징계 기준 및 가중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